

# 검 토 보 고

##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동의안

- 동 동의안은 1998년 8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8월 28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.

### □ 제안이유

'98.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'98년도분 시세(주민세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, 자동차세, 사업소세)를 감면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면제대상 : '98. 8월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자  
○ 면제내역

| 면 제 세 목                     | 면 제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'98. 균등할 주민세                | - 수해로 인해 인적·물적 피해를 입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'98. 종합토지세                  | - 수해로 인한 사망 피해 가족<br>- 건축물의 유실·전파·반파 피해자<br>- 농경지 유실·매몰 피해자<br>- 농가의 가축 피해자<br>- 수해사업장 |
| '98. 토지분 도시계획세              | - 수해로 인한 사망피해 가족<br>- 건축물의 유실·전파·반파 피해자<br>- 수해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'98. 8월 - 12월분<br>종업원할 사업소세 | - 수해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'98. 2기분 자동차세               | - 수해로 인해 폐차된 차량 소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검토의견

- 동 동의안은 '98.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 9조의 2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중 시세를 감면해 주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주요내용은 금번 수해 피해자를 대상으로하여 이들에게 '98년도 주민세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 및 '98년 8월~12월까지의 사업소세, '98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
- 시세중 일부세목에 대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유는 재산세의 경우는 금년도 세금이 이미 6월중에 납부고지 되었기 때문이며, 농지세의 경우는 과세표준 및 세율이 낮고 세액 산출과정에서 피해농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 별도의 과세 면제조치가 필요치 아니한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때문으로 사료되며, 담배소비세 및 도축세는 수해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판단됨.
- 금번 과세면제 조치는 수해로 모든 것을 잃고 시름에 잠겨 있는 수재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은 물론 재기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